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문제 없나?

공정위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지침」 마련에 따른 대비책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계약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중 시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본지는 현 제과업계의 각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가맹계약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를 점검, 지침(안) 마련에 따른 대비책을 알아본다.

최근 들어 가맹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각종 분쟁이란 상황으로 돌출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95년 10월부터 언론을 통해 편의점, 외식업, 학원 등 프랜차이즈업종에 대한 별도의 「공정거래지침」을 제정한다고 발표, 읊들어 그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파리크라상으로 이미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이며, 크라운베이커리의 경우 계약서 내용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 11월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지침내용 저촉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특약점? 그럼 위탁판매?

프랜차이즈란 어떤 상인(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 일정 지역의 다른 상인(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하여 자기의 상호, 상표 등 영업을 상징하는 표지를 사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기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영업에 대한 일정한 지원, 통제를 의미한다.

한편 선택적으로 그 영업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대한 대가로서 가맹비, 보증금 또는 로열티나 상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말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고 그의 지원 통제하에 영업을 한다는 조건에서 상품의 제조업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상품을 공급받아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특약점과 구별되고, 본인의 명의로 거래하는 위탁판매와도 구별된다.

가맹 계약의 필수적인 요소는 상호, 상표 등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의 사용 허락과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일정한 영업상의 지원, 통제 및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다.

이중 특히 가맹점주에 대한 일정한 영업상의 지원, 통제는 프랜차이즈에 의한 영업을 여타 독립적인 영업형태와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 이러한 지원과 통제의 주된 목적은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상호, 상표 등 영업을 상징하는 표지가 갖는 신용도, 인지도, 선호도 등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점주의 '영업의 질'에 대한 관리가 그 요체이다.

프랜차이즈계약의 공정거래법상 법률관계

프랜차이즈는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상인간의 계약관계이다. 가맹계약은 통상 약관(계약서)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거의 모든 경우 이러한 약관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작성되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 즉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낙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약관에 의한 계약의 체결은 대량적, 집단적인 거래활동을 간편·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경제적 기능과 성문법의 규정을 보충하고 무용한 소송을 방지하는 법적 기능을 가짐과 아울러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래방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맹점주에 대한 통일성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그러나 약관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내용의 결정은 프랜차이즈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당사자 지위의 불평등성을 심화시켜 계약 본래의 기능인 자기결정성과 자기책임성을 해칠 수도 있다.

가맹계약은 통상 상호, 상표 등의 라이선스계약, 영업지도 기타 지원에 대한 도급 또는 위임계약, 계속적 상품공급계약 또는 노하우 라인센스계약이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현재는 프랜차이즈를 따로이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규가 없으므로 문제된 사안에 따라 개별 계약별로 관련법규를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가맹 계약이 비교적 기간이 장기인 계속적 채권계약임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 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제3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제19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3조),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금지(제29조)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프랜차이즈 특성상 그 자체만을 이유로 이를 규제

하여서는 안된다는 논의가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 위반 여부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와 목적, 유형, 기능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통제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의 크기, 다른 상표와의 경쟁추진효과, 동일 상표내의 경쟁추진적 효과뿐만 아니라 유통산업의 합리화와 그 건전한 육성, 발전의 필요성도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거의 모든 가맹계약은 약관에 의해 체결되므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즉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가맹점과 본사간의 분쟁 사례 및 예방

가맹사업을 하다 보면 본사와 점주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사례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사례이다.

- 1) 오픈전 시설공사 및 초도물품의 공급의 지연이나 개점의 지연에 따른 분쟁.
- 2) 가맹시나 가맹후 가맹점 측에서 결제대금을 지연하는 경우.
- 3) 점주가 무리한 광고 요구나 영업 지원을 요청할 경우.
- 4) 반품에 있어서 그 시기나 상품 종류에 따른 분쟁.
- 5)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불량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
- 6) 매출이 하락할 경우 상권의 분석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예상 손익계산에 있어서의 본사의 실수에 대한 추궁에서 오는 분쟁.
- 7) 인력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
- 8) 가맹점에서 임의로 타사의 제품이나 기타 상품을 취급할 경우 일어나는 분쟁.
- 9) 정찰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본사 규정 유니폼의 착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 10) 무자료 거래로 부가세 자료의 제시를 기피할 경우.

한편, 이에 대해 한국사업정보개발원에서는 분쟁 예방 차원에서 몇 가지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계약서상에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예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사전에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거래 물품과 반품의 여부, 운영, 마케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POS 시스템의 완비이다. 셋째, 물류 배송에 대한 시스템을 확보하여 그에 따른 분쟁의 여지를 줄인다. 넷째,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본사는 눈에 띄는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맹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준양산 4사의 계약서 완벽인가?

다음의 분석자료는 베이커리업계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4사의 계약서를 비교하고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등을 분석해 향후 공정위의 '지침' 마련에 따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대책 마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비교·분석의 기준은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지침(안)」 중 해당 9개 항목을

제시, 여기에 4사의 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4사의 가맹 계약서의 기본 형식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파리크라상의 경우는 포함된 서류가 3가지인 것이 특징이고, 크라운베이커리와 동일하게 계약서 겉 표지에 개정시행년도를 표시한 것이 다른 업체와 구별되는 점이다. 한편 신라명과는 곧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1) 가맹거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가맹사업자는 통일적 이미지 구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가맹거래의 주요인 상품·용역의 구입, 판매 방법, 점포설비 및 관리방법, 영업활동지도 및 통제내용을 가맹희망자가 가맹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관련 내용의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4사의 계약서 상에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각 업체별로는 차이가 있었으며, 정보제공 차원에서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전 정보 제공 및 자료 미제공

가맹사업자가 자신의 가맹계약자 모집에 응하여 가맹사업을 준비하여 온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 행위로 본다.

●최근 5년간의 사업경력, 사업자와 소속 임원의 쟁송 기록 제공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희망자의 서면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자의 최근 5년간의 사업경력(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과 사업자 및 소속 임원의 쟁송 기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가맹사업자 쪽에서는 기업 정보의 누설 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준양산 4사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가입비, 보증금, 투자비, 가맹비 등의 금전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가입비, 보증금, 투자비, 가맹비, 기타 각종 금전적 부담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경우.

	고려당	신라명과	크라운베이커리	파리크라상
보증금	1,000만원 (예치금으로 표기)	미표기	• 계약이행보증금 (액수 미표기) • 상표사용보증금 (500만원)	• 제품거래보증금 (500만원) • 정비임대보증금 (500만원) 300만원
가맹비				• 교육/광고(공통분담)/ • 용역제공/식대지원비(파 견인원에 대한)점포주부담 • 제조설비, 판매장비, 각종 소모품,기타원재료부담 (액수 미표기)
시설 투자비	점포장식, 설비 점포주가 부담 (액수 미표기)	점포장식, 판매, 생산설비, 소모품 점포주가 일체 부담 (액수미표기)	제조설비, 판매장비 각종비품, 소모품, 기타 원재료 점포주가 일체 부담 (액수 미표기)	
기타		연대보증인(재산세 1.2기 각각 2만원 이상인 자)	연대보증인 1인 선정	정비임대료(오븐+발효기) 월 11만원
총계	1,000만원+α		500만원+α	1,300만원+α

< ※ 위 비용은 4사 계약서에 표기된 것만을 기준으로 함 >

보통 가맹비, 보증금 등은 가맹 계약서에 어느 정도 명시되어 있

나 그의 시설 투자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적용이 어려워 계약서 상에는 제시돼 있지 않다.

계약서상으로도 보았을 때 가맹계약자의 가맹시 소요비용이 파리크라상이 약 1,300만원 그리고 신라명과는 보증금의 액수를 계약서 상에는 표기하지 않았으며 크라운베이커리와 신라명과는 보증금 이외에도 연대보증인 1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했다. 그 외에 시설 투자비는 5개 업자가 동일하게 점포주의 부담으로 명기해 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규모는 계약서상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항도 없다. 또한 파리크라상에서는 거래 보증금은 계약연장시 재계약 당시의 규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가맹사업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품, 용역의 공급조건, 영업지도 통제에 관한 사항과 대가지급, 이익배분에 관한 내용**

상품·용역의 공급조건, 영업지도 통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대가지급, 이익배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나 설명만으로 이해가 곤란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경우.

	고려당	신라명과	크라운베이커리	파리크라상	
상품용역의 공급	주문공급, 제품의 인수와 제품 인수서 작성	완제품, 반제품, 원재료 공급	본사가 제품의 공급, 주문 결정	파견인원에 대한 용역비 부담	
공급가격	별첨에 기재	본시결정(액수 미표기)	좌동		
영업지도 및 통제	판매활동지도/판매상황 관련 자료 제출	경영상태조사 및 지도/신제품 출고시 1개월간 기본 출고단위 이상주문	신제품공급시 기본공급단위 이상을 매일 주문/판매상품제한	품질, 청결, 서비스 점검·판매장려금 지급	
반품 인정률	동절기	1.5%미만: 본사 전액부담 1.5-3%: 각각 50%부담 3%이상: 본점 전액 부담	56789월은 월간 총공급액의 2%/타월은 1%(한도초과분은 점주가 전액 부담)	15%(절기구분없이 신규 가맹점은 처음 5월간은 반품전액인정, 25일간의 위의 반품을 포함, 3.5% 인정)	공정도 기준 월매출액의 1.5%
	하절기	2%미만: 본사 전액 부담 2-4%: 각각 50% 부담 4%이상: 본점 전액 부담	2%	2%(절기에 상관없이 계절 1개월동안 총반품액 기준 70%인정/반품 인정률은 경우에 따라 변경가능)	
교육	판매교육이수 정기(연2회)/비정기 교육(조합총회등 기타 회의)	상근근무자를 반드시 1인 이상채용/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소정의 교육이수/교육관련 비용 점주가 부담 가능	소정의 교육이수/자체 생산시 제조 교육 이수(15일간)-교육비 점포주 부담(액수미표기)	
권장가격에 대한 판매마진	빵류-30%, 케이크류-30%, 아이스크림-35%, 냉동생지-별도 협정률	케이크류-30%, 빵류-30%, 즉석제조판매점은 별도 규정			
단체가입	(주)고려당 판매대리점 성실 신고 회원 조합			임의단체결성금지	

4곳 모두가 상품의 공급가격의 액수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제품이나 제품의 공급, 운반 등은 모두 가맹사업자가 결정하고 영업지도는 가맹점 경영상태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신라명과, 크라운베이커리 등은 신제품 출하시 일정기간 동안 기본 공급단위 이상을 매일 주문토록 하고 있으며 제품의 반품 인정율은 하절기의 경우 고려당, 크라운베이커리, 파리크라상, 신라명과는 2%, 동절기에는 고려당, 크라운베이커리, 파리크라상은 15%, 신라명과는 1%를 책정하였다.

점포주나 종업원의 교육은 4곳 모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들었으며 신라명과는 반드시 상근 근무자 1인을 두어야 하고, 파리크라상은 제품을 자체 생산하려면 15일간의 제조교육을 점포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비자 권장가격 대비 마진은 크라운베이커리와 파리크라상은 미표기이고 나머지 업체는 평균 약 30% 정도.

● **계약의 해지, 해제 및 갱신조건, 인근 지역의 가맹점포 현황, 가맹희망자의 출점예정, 점포의 영업실적**

계약의 해지, 해제 및 갱신 조건, 인근지역(가맹희망자의 점포 소재지 읍, 면, 동과 인접 읍,면,동)의 가맹점포 현황과 가맹희망자의 출점 예정 점포의 영업 실적 예상 등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나 설명만으로 이해가 곤란하여 이를 간략하게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경우.

	고려당	신라명과	크라운베이커리	파리크라상
계약의 해제	점주의 과실로 인해 계약해제 가능			<계약이 소멸> 5가지 조건에 따라 계약소멸 가능
계약의 해지	97가지의 해지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	6가지 계약 해지 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8가지 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	4가지 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
계약의 갱신	쌍방의 이의 없을 때 자동계약 연장	계약만료 1개월전에 쌍방 서면에 의한 해약 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	점포주는 재계약 우선권 있음/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것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 있음	점포주는 재계약의 우선권 인정/점포주의 미수회전율이 9회전 이하인 경우에만 재계약 가능
계약의 변경		쌍방 합의하에 변경 가능		
원상회복	계약종료 후 점주의 이행 사항 명기	점포주는 채무 이행 완료/계약해지 후 상표, 상호 사용 불가	점포주는 채무 이행 완료/계약해지 후 상표, 상호 사용불가	거래종료시 부가세 원납증명서 사본 제출
예치금 반환	점포주가 원상회복 의무를 모두 마칠 경우 제품대금, 손해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	채무의무 이행 완료 후 보증금 반환	점포주가 채무가 있을 때 보증금에서 상계처리 가능	미수금, 정리, 채권액 정산 완료 후 각종 자료, 시설물 철수 후 반환
인근지역의 가맹점포현황				
예상점포 영업실적				
관할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가맹사업자의 관할법원	가맹사업자의 관할법원

계약해지의 경우 4곳 모두 4~9가지의 문항을 들어 해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고려당, 신라명과는 쌍방의 동의하에 자동연장이 가능하고 크라운베이커리와 파리크라상은 계약기간 종료 후 해약의 사유가 없을 때 점포주에게 계속적인 재계약의 우선권을 주며, 특히 파리크라상은 점포주의 미수회전율이 9회전 이하일 경우에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제시. 계약의 변경은 신라명과가 쌍방의 합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

원상회복이나 점포주의 보증금 반환은 가맹사업자와 점포주의 채권관계가 완료 된 후에야 가능하고 4곳가 동일하게 손해배상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인근지역 가맹점포 현황과 예상 점포의 영업 실적 등은 계약서에는 표기되거나 그 내용을 제시해 준다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고, 상호간의 분쟁시 관할 법원은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고 있다.

(3) 가맹점포의 설비, 장비 구입의 강제

가맹사업자가 자기의 영업표지에 대한 이미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가 제시한 사양서, 품질 기준에 따라서 설비를 설치하여도 점포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지정한 자로부터 시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고려당	신라명과	크라운베이커리	파리크라상
저속 가능 사항	고려당 본점의 공통된 규격으로 제한 / 공사 감독 지정	시설 설비의 시공사 지정	이미지 통합을 위해 타 가맹점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제한/가맹사업자가 선정하는 시공업체에게 공사 의뢰/자재 구입시 통합된 지정업체의 품목과 규격 지정	통일성 유지위해 지정 시공업체에게 의뢰, 공사감독도 사전 승인
비용	점포주가 부담	최소	최소	최소

가맹계약 당시 다음의 행위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 계약서에 강제하거나 실제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 점주 이외의 제기 행위 유무에 대한 증빙 확보
- 계약 방법의 변경
- 인테리어 계약 후, 감리 확인 후 가맹계약 체결

4번 모두가 계약서상으로는 점포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유지를 위해 설비 및 자재 구입처를 가맹사업자가 지정해 주고 있으며 공사 감독뿐만 아니라 개수나 보수시에도 가맹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4) 취급상품 및 영업활동 제한

통상적인 사업 이미지 유지를 위한 필요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하게 취급상품과 용역의 제공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취급 상품, 영업활동에 대해 가맹계약자가 충분히 사전 인지하도록 한다.

	고려당	신라명과	크라운베이커리	파리크라상
취급상품 및 영업활동 제한	타사 제품판매 금지/즉석제조제품은 사전 승인 후 판매 가능	타사제품 판매금지	가맹사업자가 지정, 공급하는 상품만 취급	본사에서 정한 상품만 취급
판매지역 제한	해당 사항 없음	가맹사업자가 결정/사전승인없이 이전 불가/가맹사업자 요구 시 영업장 이전 및 확장 수락 의무	가맹사업자가 결정/독점권 불인정	가맹사업자가 결정/독점권 불인정

4번 모두가 본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이외의 타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고려당은 즉석제조상품은 사전승인 후 판매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판매지역은 고려당을 제외하고 모두 가맹사업자가 결정하고 크라운베이커리와 파리크라상은 그 지역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상품 등의 구입처 제한

통일적 사업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하게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인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및 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받도록 강제하거나 구입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

	고려당	신라명과	크라운베이커리	파리크라상
상품 및 자재구입처 제한		원제품, 반제품, 원재료는 가맹사업자가 공급/소모품은 점포주의 비용으로 가맹사업자가 결정 공급함.	제품의 주문방법 및 공급시기는 가맹사업자가 결정	제조·판매·진열장비, 각종비품, 원재료는 가맹사업자가 지정하는 업체의 품목과 규격에 제한

상품 제한은 제과업 특성상 기본적으로 가맹점 판매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제조·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맛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각종 자재 및 소모품 구입은 고려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사 결정으로 제한하고 있고 크라운 베이커리는 제품, 상품의 주문방법, 공급시기는 가맹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6) 대가의 일방적 결정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에게 새로운 금전적 부담을 지우거나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가맹계약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정하거나 대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동의가 필요.

(7) 불리한 결제 방법 강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이나 기타 거래를 함에 있어 대금 결제방법을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계약자에게만 불리하게 하거나 자기에게만 유리하도록 방법을 강요하는 행위.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당시 가맹사업자의 사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

	고려당	신라명과	크라운베이커리	파리크라상
불리한 대금 결제 방법	제품의 대금액에 대한 청구일, 입금일, 본사확인 등은 모두 본사가 결정. 만약 점주가 대금을 2회이상 지불하지 않고 제품 공급이 중단된지 7일이 지나도 대금이 2회이상 누적되면 가맹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월3회(10.20.말일)/대금결제 못하면 5%의 지체배상금이 익월로 계속 가산	5일 단위로 청구, 가맹사업자가 지정 한 기한내에 완납.	• 제품 및 소모품 대:5일단위 • 용역제공비, 장비비 대:매익일 4일 • 미완료일 경우:통보없이 제재조치(계약해지 가능)

신라명과는 대금결제를 월 3회로 정하고 미납시에는 5%의 지체배상금을 물도록 했으며, 고려당은 대금결제가 일정기간 지연되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고 명시. 파리크라상은 타 업체와는 다르게 제품대와 소모품대는 5일, 용역 제공비와 장비임대료는 매익일 4일에 대금결제를 하도록 했으며 거래보증금의 80%가 미수일 경우와 5일 단위 입금 2회 지연시 경고장 발송, 거래보증금 100% 미수와 5일 단위 입금 3회 지연시 출하 중단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8) 계약 사항의 일방적 변경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와의 거래 기간중에 거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불리하도록 계약의 내용을 변경, 수정하는 행위.

	고려당	신라명과	크라운베이커리	파리크라상
계약사항의 변경	관련문항 없음	쌍방향 합의 하에 변경 가능	관련문항 없음	관련문항 없음

신라명과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변경하게 되었을 때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표시돼 있으며 고려당, 크라운베이커리, 파리크라상 등은 거래 기간 중에 일방적인 또는 협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9) 사업 종료 후 경업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자로 하여금 가맹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종업종에 대하여 영업행위를 제한하거나 자기의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경업 금지:대리상이나 지배인 등 특정한 지위의 사람이 그 지위를 가지게 해 준 사람과 경쟁되는 성질의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일.

	고려당	신라명과	크라운베이커리	파리크라상
사업 종료 후 경업 금지	계약 종료 후 상표, 마크, 서비스표 등 사용 금지	작동	작동	계약해지 후 2년 이내에 동종업종, 타인의 동행위 원조, 영업권 양도 등을 제한

고려당, 신라명과, 크라운베이커리는 동일하게 계약 종료 후 상표, 상호, 마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파리크라상은 이것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유사업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혹은 영업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4사 계약서, 계약지침상 적잖은 문제 내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양산 4사의 계약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지침(안)」에 적용했을 경우, 대부분이 가맹사업자 위주로 작성돼 있으며 적잖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맹계약자의 과실, 책임, 의무 등만을 명시하여 이것이 불이행했을 경우 보증금 반환시 각종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였으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도덕과 상관례를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라명과는 계약의 각 조항에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가맹사업자의 해석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지침(안)’ 확정시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파리크라상의 계약서상에는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가맹사업자)’과 ‘을(가맹계약자)’의 합의하에 중재인을 선임하여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사 모두 사업경력, 소속임원의 기록, 회사의 경영상태,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맹 계약자에게 제공해 줄 경우 기업 정보의 누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분히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항목이다.

둘째, 보증금, 가맹비 외에 4사 동일하게 제품대금, 원자재비, 각종 시설비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가맹계약자가 가맹시드는 총비용을 계약서 상으로는 산출하기가 곤란하다.

셋째, 마진율에서는 고려당, 신라명과에서만 제시되어 있으며 소비자 권장가격의 30% 정도로 그 비율을 잡고 있다.

넷째, 제품공급 및 취급품목 수는 갑의 결정에 의해서 갑이 지정하는 품목만을 사용해야 하는 등 전반적인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대지원 활동, 본사의 자금력, 사업규모,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사항은 4사의 계약서 상이나 별도의 첨부 서류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가맹계약자가 요구할 경우 제공한다는 규정도 없다.

프랜차이즈 4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4사는 이같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지침(안)」 마련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의 다양한 프랜차이즈업종 중에서도 비교적 그 특수성이 인정되며, 공정거래법상 계약행위가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4사의 관계자들은 현재의 가맹 계약에 관해 저축의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으로 판단, 내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항이 상권범위에 관한 약정,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약정, 자사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약정, 계약해지나 만료 후 경업 금지, 대가 지불방법과 미수시 처벌조항, 위약금 부과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해 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가맹사업자가 오랜 기간 쌓아 온 상권 선정 등과 같은 제반 사항에 대한 노하우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CI(Corporate Identity)나 BI(Brand Identity)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특수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상 민감한 사항에 대해 계약 당시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는 관행을 감안할 때 결코 강건너 볼 보듯 할 수만은 없는 게 각 업체들의 딜레마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침(안)’에 마련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 수렴과 자체 위원 간담회를 통한 불공정 행위 기준 조정작업 등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술한 프랜차이즈 특수성이 지침 내용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침(안)’이 확정되기 전에 각 4사가 계약서상 공통적으로 지침(안)에 저축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각 업체별 입장 차이의 정리와 사전 조율을 통해 통일된 공통분모를 마련, 기준안 확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유통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유통 합리화 정책이 점차 강화될 전망이어서 더욱 불가피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글/강영주〉